전라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 - 23호

2024년도 제2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·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등 공고

2024년도 제2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·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 4. 17.

전라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

1 시험일시 : 2024. 4. 27.(토) 10:00 ~ 11:00 / 12:00

시험종류	직 급	직렬(직류)	시험시간	비고
경력경쟁	연구사	· 학예연구(일반)		3과목
		· 수의연구(수의)	10:00 11:00 (COH)	
		· 환경연구(일반)	10:00~11:00 (60분)	
		· 녹지연구(조경·임업)		
		· 기록연구(기록관리)	10:00~12:00 (120분)	6과목

※ 시험 당일 09:2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(08:20부터 입실 가능)

2 시험장소 : 목포제일중학교

.11=1=1	직급/직렬	임용예정기관/응시번호		배정 인원	시험 장소	
시험장	(직류)				학교명	소재지
	합	120				
제1시험장 (목포제일 중학교)	학예연구(학예일반)	광양시	11050001 ~ 11050046	46		전남 목포시 삼학로 277
	수의연구(수의)	전라남도	13230001 ~ 13230002	2	목포 제일 중학교	
	합면이기(이비)	광양시	14050001 ~ 14050009	9		
	환경연구(일반)	전라남도	14230001 ~ 14230039	39		
	녹지연구(조경)	신안군	15220001 ~ 15220009	9		
	녹지연구(임업)	전라남도	16230001 ~ 16230006	6		
	기르여기/기르까기	여수시	12020001 ~ 12020007	7		
	기록연구(기록관리)	강진군	12130001 ~ 12130002	2		

응시자 유의사항

[일반사항]

- 가. 응시자는 **직급/직렬(직류)/임용예정기관·응시번호별로 배정(응시표에 기재)된 시험장을 정확히 확인하시고, 교통편 및 소요시간 등을 사전에 확인**하여 필기 시험 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- 나. **직급/직렬(직류)/임용예정기관·응시번호별로 지정한 시험장소 및 좌석에서만 응시**할 수 있으며, 타 시험실에서는 절대 응시할 수 없습니다.
 - ※ 타 시험실 응시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할 수 있습니다.
- 다. 필기시험 준비물: 응시표, 신분증, 컴퓨터용 흑색사인펜, 수정테이프
 - 응시표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http://local.gosi.go.kr)에서 2024.
 4. 17.(수) 10:00부터 출력 가능하오니, 반드시 본인의 응시표를 출력하여 해당 시험장(시험실)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라며, 시험 당일에는 응시표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 - 본인 확인을 위해 **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[주민등록증,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유효한 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중 하나]을 반드시 소지**하여야 합니다.
 - ※ 학생증, 자격수첩,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, 주민등록번호가 미포함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며,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 - ※ 개명한 응시자는 증빙서류(주민등록초본, 법원 개명 결정문 등)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응시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 또는 메모된 응시표를 시험시간 중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,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- 원서접수 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수험생은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시하시기 바라며, 답안지에는 개명전 성명 및 변경전 생년월일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- 라. 수험생은 시험당일 09:2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, 문제책이 시험실에 들어가면 수험생은 입실할 수 없습니다.(시험당일 08:20부터 시험실에 입실 가능)
 - 시험시간 관리는 수험생 책임이며, 종료시간 예고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손목시계 등을 통하여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계산 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휴대 불가)
- 마. 「취업지원대상자·의사상자」 및 「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」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반드시 해당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 〈4.27.(토) 09:00 ~ 4.29.(월) 18:00〉 응시원서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에 등록하여야 합니다.
 - ※ 자격종류 및 가산비율, 번호(보훈번호 등)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 - ※ 가산점 등록기간 내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에 등록하지 않은 가산점은 인정 되지 않으며, **필기시험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.**
- 바.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, 통신장비(휴대폰, 스마트워치 등)와 전산기기(전자계산기, 전자수첩 등)는 시험시작 전에 전원을 꺼서소지품과 함께 시험실 전면으로 내 놓아야 하며, 전원이 차단되어 있더라도 시험시간 중 몸에 소지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.(특히, 스마트워치 등)
- 사.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,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, 불가피하게 시험시간 중 시험실을 퇴실할 경우 재입실이 불가하므로 본부요원의 안내에 따라 시험시행본부에 대기하였다가 시험 종료 후에 귀가하여야 합니다.
 - 다만, 기록연구 직렬은 시험시작 후 30분 이후부터 시험종료 20분전까지만 1회에 한하여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.
 - 화장실 사용 전 입구에서 휴대전화, 부정자료 등 소지에 대해 검색하며, 화장실 사용 전·후에 화장실 내부에 기재사항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.
 - 휴대전화 및 시험과 관련된 부정자료 등 소지, 화장실내에서 시험관련 기재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.
 - ※ 부정행위를 한 시람에 대해 그 시험을 정지 무효로 하고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
 - 화장실 사용 시 이동시간과 소지품 검색 등에 일정시간이 소요되고 이를 포함한 화장실 사용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므로 시험시간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신 분은 조용히 손을 들어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주시고 이동시에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시험 중 퇴실 또는

- 지정시간 외 화장실 사용 후 재입실이 불가하며 복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시험시행 본부에 대기하였다가 시험 종료 후 귀가하여야 합니다.
- 시험 중 수험생 이용 화장실로 사전 지정된 **화장실 문에 부착된 봉인을 허가 없이 훼손할 경우, 부정행위자로 간주** 처리합니다.
 - ※ 시험 시간이 짧은 3과목 직렬(학예·수의·환경·녹지)은 화장실 사용이 불가합니다.
- 아. 수험생이 아닌 **외부인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**, 시험장에는 주차장이 없거나 매우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, 시험장 진입로에는 교통이 혼잡하므로 **가급적 시험장 인근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이동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※ 운동장에 주차가 가능한 시험장이라도 차량수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, 특히 비가 내릴 경우에는 시험장내 운동장에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.
- 자.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.
- 차.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 등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에 대하여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,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
【 답안지 표기 관련사항 】

- 가. <u>답안지의 모든 기재(표기)사항은 『컴퓨터용 흑색사인펜』으로만 작성</u>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(사인펜에 "컴퓨터용"으로 표시되어 있음)을 지참 하여야 합니다. ※ 답안지에 수성사인펜, 연필, 일반 필기구 등은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나. **답안지 채점은 OMR 판독기기가 판독한 결과대로만 채점**되므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이 아닌 수성사인펜을 사용하거나, 이중표기 또는 연필·볼펜 등으로 덧칠 표기하는 경우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, 이에 따른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다. <u>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번호에 "●"로 표기</u>하여야 하며, 수험생 **본인이 지참한 수정테이프로만 답안을 수정**할 수 있습니다.(<u>단, 표기한 부분을</u> 긁는 행위나 **수정액 및 수정스티커 등의 사용 금지**)
 - ※ 답안지는 훼손·오염되거나,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(▮▮▮▮▮)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.
 - ※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을 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할수 있습니다.
- 라.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 편철이 표지의 과목순서와 일치하는지 여부, 문제책 누락, 인쇄상태 및 파손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마. 시험과목의 답안지 표기순서는 직급/직렬(직류)별로 반드시 시험문제책 표지의 시험과목 순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.
- 바. 시험문제책은 비공개하므로 시험종료 후 시험문제책을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.

【 부정행위 등 금지사항 】

- 부정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오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①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65조 제1항 위반행위
-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
-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-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-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
-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-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- ②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65조 제2항 위반행위

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

-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
-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-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
-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
 -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
 -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
 -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
 -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

4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: 2024. 5. 10.(금)

○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**전라남도 홈페이지 「시험정보」란에 게시**합니다.

(http://namdo.jeonnam.go.kr/sihum/)

5

※ 불합격자 개인별 성적 조회(2024. 5. 10. ~ 12. 31.) /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 센터(http://local.gosi.go.kr)

│ 시험관련 문의 : 전라남도 총무과 인재채용팀(☎ 061-286-3372~5)